

안전한 교회 지침 (Safe Church Policy)

[통치 기구]에 의해 [날짜]에 채택됨

약속 (Commitment)

본 교회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특히 어린이, 청소년, 취약한 어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범으로 하는 장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목적 (Purpose)

본 교회가 안전한 교회 지침을 채택한 것은: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30-31)'는 성경적 의무사항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 10 대 아동 안전 준칙 (10 Child Safe Standards)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 어린이, 청소년 및 취약계층 성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 및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틀(framework)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다음에 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이다:
 - 아동 관련 사역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ACT에서는 법에 정의된 활동 (Regulated Activities)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워진 법적 의무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sexual abuse), 성적 비행 (sexual misconduct) 및 아동관련 보고 사안 행위(Reportable Conduct)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본 문서 (안전한 교회 지침)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약속의 실제 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절차(procedures) 및 지침(guidelines)을 참조하라.

범위 (Scope)

본 문서는 모든 교회 지도자, 직원 및 자원 봉사자, 교회 및 교회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1. 교회 아동을 위한 활동과 서비스

교회는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전한 공간, 프로그램, 인간 관계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1.1 교회 지도자:

- a. 아동들(children)과 청소년 (young people)들이 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 설교, 훈련 행사 및 모임에서 이 사실을 설명한다;
- b. 적절한 경우 교회 일상 활동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참여시킨다.
- c. 예산, 건물, 개조(renovations), 교회 재산 사용, 장식(décor) 또는 음식 제공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구사항을 고려한다.
- d. 적절한 경우 교회 모임과 회의에 아동과 청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내도록 장려한다.

1.2 교회 안전 팀(Safe Church Team):

- a.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경청 받고, 자신의 견해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또한 그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상처받았다고 느끼거나, 다른 누군가가 안전하지 않거나 상처받았다고 의심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도록 한다.
- b. 아이들이 교회 안전팀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

1.3 직원 및 자원봉사자:

- a.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b.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어떤 행동, 태도, 문화 등을 갖기 원하는지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들과 상의한다.
- c.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속한 그룹에서 원하는 활동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갖도록 권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활동 지침(Guidelines for Activitie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을 참조하라.

2. 직원 및 자원봉사자 (Staff and Volunteers)

2.1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심사, 선정 및 신입 교육 (induction)

- a. 교회는 모든 직원과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적절한 심사 절차(screening process)를 시행한다.
- b. 교회는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모든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한다.
- c. 교회는 모든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신입 교육(appropriate induction)을 시행한다.
- d.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절차(Procedure for Staff and Volunteers)*에 따라 모집(recruit), 선정(select) 및 교육(induct)되어야 한다.

2.2 직원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 제공

- a. 교회는 모든 개인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b. 교회는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공간 조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교회의 절차, 지침 및 양식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 c. 교회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유지하는데 충분한 자원들을 지원한다.
- d. 교회는 *직원 및 자원 봉사자 절차(Procedures for Staff and Volunteers)*를 시행한다.

2.3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행동 표준

- a. 교회는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전한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인간 관계를 제공한다.
- b. 교회는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에 따라 어린이 및 취약 성인 대상 사역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 c. 교회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아동 및 청소년 활동 지침 (Guidelines for Activitie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을 따르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 절차(Procedure for Staff and Volunteers)* 및 *선별 질문(Screening Questionnaire)*을 참조하라.

3. 갈등(Conflict), 항의(Complaints), 우려(Concerns)

3.1 아동의 안전 우려에 대한 대응

- a. 교회는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한 대응절차(Procedures for Responding to Child Protection Concerns)*에 따라 모든 아동보호 문제와 아동 성적 학대 및 아동과 관련된 성적비행에 대한 모든 항의 사항들이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되도록 한다.
- b. 교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모든 우려와 항의가 관련 정부 부처에 보고되고,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의무에 따라 경찰에 신고되도록 한다.

3.2 항의 처리

- a. 교회는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의 처리 절차(Procedure for Handling Complaints against Staff and Volunteers)*에 따라 대응한다.
- b. 교회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아동 성학대, 아동 관련 성적비행 행위 등 학대를 했다는 민원이 있는 경우 이를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의 처리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 c. 행동강령의 사소한 위반이나 불만사항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경우 교회는 *분쟁해결 절차(Procedure for Resolving Conflict)*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한 대응 절차* 및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항의 처리 절차*를 참조하라.

4. 안전한 환경 (Safe Environments)

4.1 물리적 환경

- a. 교회는 물리적 환경과 온라인 환경이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보장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b. 교회는 WHS (Work, Health and Safety)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 c. 교회 환경이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끼칠 수 있는 영향과 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 d. 교회 프로그램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처한다.
- e. 교회 재산 가운데에 거주지 (residential property)가 있는 경우 교회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이 거주 기간 동안 WWCC 또는 WWVP 증서를 받고 보유하도록 한다.

- f. 교회가 지원하는 해외사역을 포함한 모든 사역단체가 적합한 아동보호절차가 있는지 고려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특정 고아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때 아동보호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2 온라인 환경

교회는 모든 온라인 의사소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활동 지침(Guidelines for Activitie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을 참조하라.

5.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5.1 우려 대상자 (Persons of Concern)

교회는 *우려 대상자에 대한 호주 침례 교단 대응절차(An Australian Baptist Response to Persons of Concern)*에 따라 관심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관리한다.

5.2 위험 평가

- a. 각 사역 리더들은 교회에서, 또는 교회를 위해, 또는 교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수행 시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 정기적인 활동의 경우, 위험 평가는 최소한 매년 시행되거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된다.
 - 비정기적 특별 활동의 경우 목회자 또는 교회안전팀이 행사 전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다.
- b. 교회는 위험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소를 처리하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교회는 위기 상황의 발생 가능성, 결과의 심각성, 위험 방지의 어려움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 c. 교회는 위험 평가 양식을 최소 45 년 동안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6. 외부 단체 및 협력 단체 (Affiliated Entities)

- a. 교회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제 3 자(세입자 또는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외부 단체)에게 최소한 매년 어린이 안전 표준을 준수한다는 서면 확인을 요구한다.
- b. 교회는 모든 협력 단체(본 교회의 사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나 프로그램)가 어린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교회 운영 위원회 (또는 당회)에 보고하는 연간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기록 보관

- a. 교회는 모든 문서 기록을 최소 45 년 동안 하드카피 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존한다.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문서의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보관되며 권한이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도록 한다.
 - 기록을 하드카피로 보관하는 경우, 접근성 및 물리적 조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보안이 유지되고 접근이 가능한지 모니터링한다.
- b. 이 항목이 적용되는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사역 정보 문서(Ministry Information Sheets)
 - 직원 및 자원 봉사자 파일(Staff and Volunteer files)
 - 출석 (입출입) 시트(Attendance (sign-in/sign-out) sheets)
 - 위험 평가 양식(Risk assessment forms)
 - 교회 안전 등록부(Safe Church Register)
 - 교회 안전 우려 양식(Safe Church Concerns forms) 및 관련된 모든 기록(any contemporaneous notes regarding reporting decisions)
 - 외부 및 협력 기관이 제출한 연간 아동 보호 약속(Annual Safe Church commitment by third parties and affiliated entities)
 - 각 시기별 사용한 안전한 교회 지침, 절차, 양식 또는 관련된 문서로 날짜가 표시된 사본(Dated copies of any *Safe Church Policy, Procedure, Form* or associated document in force at any time)

자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정책(the *Privacy Policy*)을 참조하라.

8. 검토 및 책임 (Review and Accountability)

8.1 내부 검토 (Internal Review)

교회는 매년 이 지침을 재검토한다.

8.2 외부 책임 (External Accountability)

교회는 *직원 및 자원 봉사자에 대한 항의 처리 절차(Procedure for Handling Complaints against Staff and Volunteers)*와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한 대응 절차(Procedure for Responding to Child Protection Concerns)*에 따라 보고 사안 행위 (reportable conduct) 관련 문의 사항이나, 아동 보호 문제 및 공인 목사(accredited pastor)에 대한 항의와 관련하여 교단 (Baptist Churches of NSW & ACT)의 사역 표준 관리자 (Ministry Standards Manager)의 조언을 구한다.

9. 용어의 정의 (Definitions)

본 문서인 안전 교회 정책 및 관련된 문서에 적용된다 (맥락이 다르게 정의하지 않는 한):

교회(Church) 이 안전 교회 정책을 채택한 지역 교회를 의미한다.

공개(disclosure) 개인이 자신의 학대(abused) 사실이나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neglected)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목회 직원(Pastoral Staff) 교회를 통해 목회 사역에 종사하는 모든 목회자, 공인(Accredited) 또는 인정된(Recognized) 목사 또는 교회의 유급/무급 직원을 의미한다.

보고 사안 행위 법안(Reportable Conduct Legislation) NSW 에서 2019 년 제정된 아동 보호법 (*Children's Guardian Act 2019*)과, ACT 에서 1989 년 제정된 옴부즈맨 법 (*Ombudsman Act 1989* (ACT))

신입 교육 또는 신입 교육 절차 (Induction or induction process) 신입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에 대해 사역 관련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소개해 주는 절차. 화장실이나 복사기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것을 포함하여 절차나 업무 구조를 설명하는 절차이다. 조직의 비전, 업무 기술, 문화적 특성 등이 소개될 수도 있다.

안전 교회 등록부(Safe Church Register)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등록 대장을 의미한다.

NSW 에서, WWCC 법안의 9A 항에 따라 아동 관련 업무 및 관련 세부 사항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 및 자원 봉사자의 상세 내역

ACT 에서 정의된 활동(Regulated Activity) 종사자에 대한 모든 WWVP 상세 내역

안전한 공간 만들기(Creating Safe Spaces)교단 (the Baptist Churches of NSW & ACT)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공간 만들기 워크숍 (Creating Safe Spaces training) 또는 안전 교회 훈련 협정(Safe Church Training Agreement)에서 승인된 대체 훈련으로 대면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의무 보고 법안(Mandatory Reporting Legislation) NSW 에서 1998 년 제정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보호) 법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 과 ACT 에서 2008 년 제정된 어린이 및 청소년 법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 (ACT)).

청소년 (young person) 16 살 또는 17 살의 젊은이들을 말한다.

취약한 상태(vulnerable)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나이, 질병, 외상, 장애,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인해 위해나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적,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불이익을 포함한다.

통치 기구(governance body) 교회 헌법에 의해 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기로 지정된 기구를 의미한다. 집사 협의체 (Diaconate), 당회(Elders) 또는 교회 협의회(Church Council) 일 수 있다.

항의(complaint) 불만에는 교회 행동 강령 또는 교단 (the Baptist Churches of NSW & ACT)의 윤리 및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모든 주장, 의혹, 우려 또는 보고가 포함된다. 또한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해 외부 기관에 공개된 내용도 포함된다.

WWCC 법안(WWCC Legislation) NSW 에서는 2012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Working with Children) Act 2012

WWVP 법안(WWVP Legislation) ACT 에서 취약계층활동 법안 2011 (Working with Vulnerable People (Background Checking) Act 2011 (ACT).